

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21. 00. 00.>

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변경 승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
		팩스번호
	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명칭	사업자등록번호(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
		요양기관번호(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)
	주소	

	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변경내용	생산품목 추가			
	생산품목 변경			

「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의2제2항 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0000 특별시장·
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보건복지부 장관
귀하

첨부서류	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

